지식경제부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	**보도자료**	함께하는 공정사회! 더 큰 희망 대한민국 http://www.mke.go.kr
2012년 1월 25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자료문의 : 지역투자과장 정승희(02-2110-50901), 사무관 위승복(5094)		

지방투자보조금, 지역 일자리 창출형으로 확 바뀐다

–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방경제 활성화 기대 –

<일자리 창출>

(사례) 경남에 소재한 'A' 자동차 부품 업체는 FTA효과를 활용하기 위해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300억원을 투자했으나 15명을 신규로 고용하는 것에 그쳤다.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지자체 담당자는 지역경제를 위해서 한명이라도 더 고용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렵게 유치한 투자가 고용증가로 이어지지 않아 고민이다.

□ 이제 위 사례처럼 투자는 많이 해도 **일자리가 창출되지 않는 기업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받기 어렵게 됐다.**

○ 지식경제부가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「지방투자촉진보조금」을 **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'지역 일자리 창출형'으로 개편**했기 때문이다.

- 이에 따라 그간 '투자액' 중심으로 지원하던 보조금을 앞으로는 **'투자액'과 '고용창출 규모'를 함께 고려**해 지원할 전망이다.

○ 따라서 **보조금 신청기업**은 신청서에 제시한 **고용창출 목표에 따라 보조금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이 결정**될 뿐만 아니라, **고용실적이 목표에 미달할 경우 보조금이 일부 환수될 수도 있음을 유의**하여야 한다.

<보조금 지원의 지역편중문제 해소>

□ 이와 함께, 보조금의 지역 편중문제 해소를 위한 시책도 함께 포함돼 **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여러 지역에 골고루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.**

○ 그 동안 수도권에서 먼 거리에 위치해 있어 기업유치가 어려웠던 지역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더 지원*해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.

* 지원 저조지역에 대해 국비 매칭비율 및 기업 지원 비율 5%p 추가지원
* 지원 저조지역 : 부산, 대구, 울산, 경남, 경북, 광주, 제주

○ 금번 제도개편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**수도권 원거리 지역에 투자할 경우 보조금을 더 지원**받을 수 있게 되었고, 수도권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지자체 입장에서도 국비 매칭 비율이 늘어 같은 예산으로 더 많은 기업을 유치할 수 있게 되었다.

□ 보조금의 지역편중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년도 제도개편 시 △지방 신증설 투자 지원, △지역별 보조금 先배분 제도 등을 도입한 결과, **그간 보조금 지원이 미미했던 지역도 보조금에도 보조금이 골고루 지원되는 효과**를 거둔바 있다.

* 지원금액('10→'11,억원) : 부산(0→78.2), 광주(3.9→65.3), 대구(0→53.5), 경북(1.9→130.6)

○ 그러나 수도권 인근지역에 대한 보조금 집중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아 **금번에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**한 것이다.

* 충남·충북·강원 집중률 : ('10)57.5% → ('11)40.7%

<중견기업 지원 강화>

□ 또한, 정부의 중견기업 육성정책과 연계하여 **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별도로 규정**하고 **지원을 강화**함으로써, 앞으로 투자유치 효과가 큰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지방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.

○ 그동안에는 중견기업에 대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같이 낮은 지원 비율을 적용해 왔다.

○ 이번 조치로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보다는 적지만, 대기업보다는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.

<일반지역에 투자할 경우 지원비율>

이전기업 지원			신증설기업 지원	
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
입지(－) 투자(5%)	입지(20%) 투자(7%)	입지(40%) 투자(10%)	투자(7%)	투자(10%)

* 기업의 부지매입 비용 및 설비투자비의 일부를 지원

<효력발생 시기>

□ 지경부는 지난 1월 4일 관련 내용을 포함한 고시를 개정한 바 있으며, 지자체는 조례개정*이 완료되는 대로 개정된 내용에 따라 지방투자기업에 대한 지원을 시작할 전망이다.

* 조례개정 일시는 각 지자체 상황에 따라 다름(1월~4월)

○ 지경부 권평오 지역경제정책관은 '정부는 지역민의 어려운 취업사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각종 정부사업이 일자리로 이어지도록 할 방침'이라고 밝혔다.

- 아울러, 각 지자체에 대해 금년부터 바뀐 보조금 제도를 잘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.

참고1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개요

□ **(보조금 제도 개요)** 지자체가 기업유치 과정에서 기업에 지원하기로 한 보조금을 국비·지방비 매칭(일반지역 70:30)으로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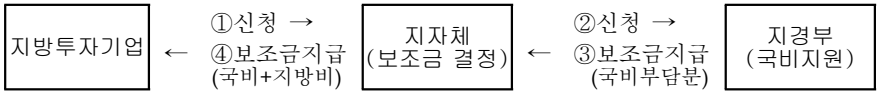
○ 지원유형 : 수도권기업 이전보조*, 기업 지방 신증설 투자보조**

*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보조금 지원
** 국내 소재 중소기업이 비수도권에 신증설 투자할 경우 보조금 지원

○ 지원내용 : 입지보조·설비투자 보조·교육훈련 보조

* 신증설 투자는 입지보조 미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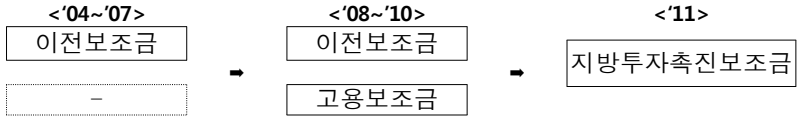
○ 지원절차 : 지자체가 유치한 기업에 대해 지경부에 신청하면 지경부는 지원타당성을 평가하고,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 결정



* 모든 지방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자동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유치한 기업(MOU를 체결 등)에 대해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선별지급

□ **(추진경과)**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여 수도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 보조금 제도를 '04년 도입

○ 그간 「이전보조금」 및 「고용보조금」으로 운영하다 '11년부터 「지방투자촉진 보조금」으로 통합 운영



○ '04~'11년간 총 4,926억원을 지원(지방투자촉진 4,106억원, 고용보조 820억원)

참고2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제도 운영성과

□ **(지역)** 보조금 제도는 **지방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기여**

○ (지방투자보조) '04~'11(7년간) 353개 이전기업에 총 3,863억원, '11년에 45개 신증설기업에 243억원을 지원하여 총 9조9천억원 투자유도

- 지원금액 대비 약 24.1배의 지방투자 유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

○ (고용보조) '08~'10(3년간) 3,427개 기업에게 820억원을 지원하여 **1만 8천여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**에 기여

□ **(기업)** 이전기업 대상 설문조사 결과 **보조금 제도가 지방이전 결정의 주요 요인**인 것으로 조사*

* 이전기업 136개 대상 조사('09년, 산업연구원) 이전요인 : 생산시설 확장(36.5%), 정부 인센티브(26.4%), 기존지역 높은 지가(15.9%)
* 이전기업 대상 설문조사('11.11, 우리부) : 지방이전 시 보조금을 결정적 또는 중요요소로 고려(87.5%), 참고사항으로 고려(12.5%)

○ **이전기업은** 이전 후 경영성과가 개선되고, 생산시설 확장, 지역소득 창출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

* 이전기업 매출액 증가율 : ('04)8.5%, ('06)22.0%, ('07)16.7%, ('08)13.4%

□ **(지자체) 투자유치 활동의 주요한 수단**으로 보조금 제도를 활용

○ 지자체에게 투자유치수단을 제공함으로써 **지역투자에 대한 관심제고** 및 **지역경제 활성화**에 기여

* 예 : 전남은 보조금 제도를 활용하여 1,000개 기업유치 프로젝트 적극 추진(보조금 지원 실적 : '08 0.6억 → '11 142억)

참고3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제도 주요 개편 내용

1 **(일자리 창출 강화)** 고용효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등 **보조금 수혜 기업이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유도**

○ 현행 '투자액' 중심의 지원타당성 평가 및 **성과관리 체계에 '고용규모'를 추가하여 고용창출 의무를 기업에 부과**

* 현재는 고용창출 규모는 지원 타당성 평가 시 참고 용도로만 활용 중 ⇒ 보조금을 분할지급하여 고용규모 및 투자실적 未달성 기업에 대해서는 未달성율만큼 보조금을 정산(감액)하여 지급

○ 보조금 지원 여부 결정시 타당성 분석 평가서상 **'신규 고용창출 인원'에 대한 가중치를 대폭 상향**

* (현행) 15점 → (개선안) 20점 (100점 만점 중 60점 미만기업은 보조금 지급 제한)

2 **(지역편중 완화)** 투자유치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해 국비 지원 비율과 기업지원 비율을 상향

<중소기업 기준 지원제도 개편내용>

		현행	개선(안)	비고
지원실적 저조지역[1]	국비 매칭비율	75:25	80:20	국비매칭비율 5%p 확대 (75→80)
	기업 지원비율	입지보조 40% 설비투자 10%	입지보조 45% 설비투자 15%	기업지원비율 확대
일반지역	국비 매칭비율	70:30	70:30	현행유지
	기업 지원비율	입지보조 40% 설비투자 10%	입지보조 40% 설비투자 10%	현행유지

1) 최근 3년간 보조금 교부액이 총 보조금의 5%미만인 광역 지자체
2) 낙후지역(균특법상 성장촉진지역)은 국비지원비율5%p, 기업지원비율10%p 가산지원

○ 특정지역에 보조금 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별 보조금 배분기준 개선(최근 3년간 지원 실적이 적은 지자체에 많이 배분)

3 **(중견기업 육성정책과 연계)**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정부정책과 정합성 제고

○ 기존 이분법적 지원(중소기업, 그외 기업)기준을 개정하여 '중견기업'을 지원대상에 별도로 명시

* 기존 보조금 제도는 대기업·중견기업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지원을 제한

<중견기업 지원방안(안)>

분류	이전기업 지원			신증설기업 지원	
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
일반지역	입지(-) 투자(5%)	입지(20%) 투자(7%)	입지(40%) 투자(10%)	투자(7%)	투자(10%)
수도권 인접지역	입지(-) 투자(3%)	입지(-%) 투자(5%)	입지(15%) 투자(7%)	투자(5%)	투자(7%)
지원실적 저조지역	입지(-) 투자(7%)	입지(30%) 투자(10%)	입지(45%) 투자(15%)	투자(10%)	투자(15%)

* 신증설기업 지원의 경우 대기업은 지원배제

4 **(사후관리 체제 정비)** 보조금 **수혜기업에 대한 의무사항**과 **지자체의 이행상황** 점검결과에 따른 **조치방안 등을 명확히 규정**

○ 투자금액 이외에도 고용창출, 매출액 증가 등 보조금 지원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체제를 정비하여 **투자효과 담보**